조선충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394호(號) 1931(昭和 6)년 8월 27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07호(號)

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을 아래[左]와 같이 할인(割引)함.

1931(昭和 6)년 8월 27일

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字垣一成)

- 1 품 명(品 名) 벼[籾]
- 2 발 역(發 驛) 신태인(新泰仁)
- 3 착 역(著 譯) 부산진(釜山鎭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률(賃 率) 보통임률(普通賃率)의 1할(割) 감(減)
- 6 기 간(期 間) 1931(昭和 6)년 9월 15일까지
- 7 기 사(記 事) 가 소정임률(所定賃率)에 의(依)한 기간(期間) 내(內)에 2천 톤(瓲) 이 상(以上)을 하수(荷受)한 자(者)에 대(對)하여 기수(旣收) 운임(運賃)과 본(本) 임률(賃率)에 의(依)한 운임(運賃)과의 차액(差額)을 환급(還給)함으로 함.
 - 나 본(本) 운임(運賃)은 지정운송취급인규칙(指定運送取扱人規則) 제 10조(條)제4호(號) 적용상(適用上) 보통운임(普通運賃)으로 간주 (看做)함.
 - 다 본(本) 임률(賃率)의 적용(適用)을 받고자 하는 것은 기간(期間) 경과(經過) 후(後) 즉시 아래[左]에 게시(揭)한 양식(樣式)의 조서 (調書)를 착역(著驛) 역장(驛長) 경유(經由) 조선총독부 철도국 영 업과(朝鮮總督府鐵道局營業課)에 제출(提出)함으로 함.

신태인발 부산진착 벼운임조서(新泰仁發釜山鎭著籾運賃調書) 하수인(荷受人)

화물운송통지서(貨物運送 通知書)				톤 수(瓲數)	소 정 운 임(所定運賃)		할 인 운 임(割引運賃)		환 급 액(還給額)	
월(月	월(月) 일(日)		호(番號)	七 1 (地数)	工 6 记 司(別定建員)		. 是记记品的/ACE具/		む 日 寸(逐和領/	